

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신청취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

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취소 대상자에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

2026. 08. 25.

경기지방고용노동청



1. 건 명: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신청취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
2. 근 거: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, 제12조, 행정절차법 제14조
3.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

성명	생년월일	서류의 명칭	서류의 주요내용			송달불능 사유	주소
			예정된 처분의 제목	처분사유	처분하고자 하는 내용		
이○석	92.01.01.	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신청취소 사전 안내	수급자격 직권 취소	초기 필수 대면상담 미참여 (출석통지 2회이상 불응)	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신청취소 처분	폐문부재 (반송)	경기도 화성시 동탄청계로 303-13(이하 생략)

4. 공고기간: 2026. 8. 25. ~ 2026. 9. 8.(15일간)
5. 기타 사항은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수원고용센터 최문숙(Tel. 031-231-7963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